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가입자**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한국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운용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란 험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의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 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기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기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할 때는 기업자이거나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5. "급여이전"이라 함은 기업자가 퇴직금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이라 함은 기업자에게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기업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자산지정운용제"란 기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거나 경우 사전에 자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자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10. "내기성상금"이란 기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과 금리연동형 신契约로 대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는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기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기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첨달하는 업무
  5. 기업자의 급여이전 신청, 중도수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범위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범위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 또는 계약종료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제15조에서 정한 연금지급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기자)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종료일(최종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5조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도의 설정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6조 (가입자 및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워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워탁기기관에 수행하게 한 경우 제19조의 기업자교관 업무의 일부를 재워탁한 경우에는 재워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③ 기입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의의 취지와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별의 번호와 수를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명확할 것
4. 적립금의 증강기·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것
5. 적립금 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예탁금, 신설기반신설증권, 파생결합사채(일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신설기반신설증권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6. 국제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7. 투자적격 특수수혜(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8. 투자적격 해외채권
9.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10. 투자적격 주택자금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11.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12. 해외 상장주식
13. 기관·개인형 퇴직연금 거래계약
-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기업자에게 제시합니다.
- ④ 기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초기해 출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산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고지(고지과거운용기준)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기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기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 제7조의2 (기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① 회사는 기입자에게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내용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구조, 손실기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기입자에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사항

다. 예금자보호한도 등 기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 제2항부터 5항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3 제4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③ 회사는 기입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 제7조의3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① 기입자는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립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 암호화합니다.

② 기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기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기입자는 회사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제7조의4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

①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한 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됨을 통지합니다.

② 기업자가 이 제도에 기여해 초기부담금을 납입한 날의 영업일

2. 기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경우 회사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기업자에게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기입자는 회사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립금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1. 1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해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기업자가 이 제도에 기여해 초기부담금을 납입한 날의 영업일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2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③ 기업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해 아니할 경우 회사는 해당 기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며, 이 경우 기업자가 스스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것으로 됩니다.

④ 기업자가 제3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해 암호화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1. 기업자가 이 제도에 기여해 초기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는 대기상자금으로 투입

2. 기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에 대기상자금으로 투입

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제7조의5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①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립금을 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기업자에게 제7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자 통지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시유

2.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기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3. 기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기여해 초기부담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기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④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기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해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기업자의 적립금을 운용방법으로 선정해 암호화된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기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기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7조의6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립금을 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자 통지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자는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기업자의 적립금을 기企业发展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에 관한 정보를 기企业发展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기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자의 적립금을 같은 원형등동형의 다른 운용방법으로 대체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만기 예정일의 적립금을 전까지 기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7조의4가 적용되며,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되거나 전자지정기기의 적립금 운용은 대기상자금으로 운용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용에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⑥ 제3항에 따라 기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로써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이전해도 통지해도 좋습니다."라고 합니다.

⑦ 회사는 기업자에게 운용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⑧ 기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과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 시장을 거절하여 운용지시에 대해 해당 원칙과 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⑨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기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 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원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기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을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기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기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당금의 납입 등)**

- ① 기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당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일시부당금 : 기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당금 : 기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3. 연금저축계좌와 차별부당금 : 기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제하는 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기업자와 금융기관에 의해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부당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 ①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IRP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제13조 (기인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 ① 기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기인자 정보"라 합니다)를 시연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과 기인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업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재워너기밀을 설정한 경우 통지받은 기인자정보를 재워너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 및 재워너기밀은 사용자는 또는 기업자로부터 통지 받은 기인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자연에 따른 순위에 대해 회사 및 재워너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제할 수 있음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인자정보의 취지 및 제한)**

-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기인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인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 ① 기업자는 회사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 ② 기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기업자가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은 법·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 55세 미만의 기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17조의 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④ 기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연금지급 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계약에서 "연금지급 조건"이라 합니다)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연금지급기간
  2. 연금지급기기(월, 분기, 반기, 연)
  3. 연금지급기준일
  4. 연금지급액 산정방식
  5. 자산매각순서
  6. 기타 연금의 자금을 위하여 회사 및 자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 ⑤ 연금지급액은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⑥ 기업자는 전자연금지급기기인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5항에서 정한 연금지급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을 위한 신탁재산 매각증에는 조건 변경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 입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용료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 5호 전단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6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기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인2호, 무주택자인 기업자가 수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당기는 경우
2. 기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당기는 경우  
가. 기업자 본인  
나. 기업자의 배우자  
다. 기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예산하여 5년 이내에 기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예산하여 5년 이내에 기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까지 결정을 받은 경우)
49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기업자가 부당하는 경우  
가. 기업자 본인  
나. 기업자의 배우자  
다. 기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기업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기업은 사우여 및 오건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금액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기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기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종도해지)**

- ① 기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 상 중요 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 ① 기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기업자에게 계약이전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을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 ④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원으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기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시지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기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역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1조(면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역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의 지역보상금은 운용지시기기 사전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한다)에 운용지시기기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역보상금 여보장법 시행령 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설정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지역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기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 (기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기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선행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기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기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윤리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기업자로부터의 자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기업자로부터의 자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자연
  3. 기업자의 시지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자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기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인감신고)**

- ① 기업자는 운용관리계약을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을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서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신고사항)**

- 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자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거래증명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기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하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망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기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기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기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기인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기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기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기업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기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하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망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기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기업자 손실보상)**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기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기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기업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보장)**

-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기업자와 회사가 각각 이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제1조 (시작일)**

- 이 계약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 ①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형 통지시지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②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시행일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별지1 제3조제1항제3호의 적용 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1년초과 여부는 2024년 4월 1일 이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3조 (자동제어의 유효기간)**

-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기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 직전 영업일 전까지 기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여지됩니다.
-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로부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가입자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한국국토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 제1조 (업무의 일부위임)

회사는 계약서 제1조 제2항에 의해 연금계리업무 및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자사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자사전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입니다. 운용관리수수료는 운용관리일반수수료와 운용손익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운용손익수수료란 적립금의 운용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수료가 운용손익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기본수수료와 손익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제3조 (수수료의 징수)

-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매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체결일 또는 직접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 일까지의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에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운용관리수수료의 합계로 하며, 해당 계산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정수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일시금 지급의 경우에는 일시금자금일,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일의 경우에는 최종연금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일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일시금 지급일, 중도인출일, 최종연금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정수합니다. 이내,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식선훈련비와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차 적용 합니다. 단, 직접 계산기준일부터 해당계산기준일 전일 기준 1년을 초과하여 동일하게 운용자사전달업무(초저위험형 제외)의 일별자산평가액은 3-1호를 적용합니다.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운용관리일반수수료율 (연)
1.5억원 이하	0.15%
1.5억원 초과	0.10%

체차 적용에 대한 예시(일별 적립금 평가액: 3억원) 일별수수료 체차적용 산정식: 「(1.5억원\*0.15%+1.5억원\*0.10%)/n (단, n은 365 또는 366)」

3-1. 제3호를 적용시 저처위험형을 제외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스스로 상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은 다음과 같이 체차적용합니다.

일별 사전지정운용적립금자산평가액 <sup>주1)</sup>	운용손익수수료율 (연) <sup>주2)</sup>	
	기본수수료율 (연)	손익수수료율 (연)
1.5억원 이하	0.13%	0.02%
1.5억원 초과	0.08%	0.02%

주1) 일별 사전지정운용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체차적용시 사전지정운용적립금 외의 적립금을 합산 적용하여 구간별 수수료율 적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함이 있게 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상품구간별로 계산하여,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순서로 평가액합산동일유형 2개 이상 상품은 상품매수일이 빠른 순하여 수수료율을 체차 적용합니다.  
주2)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수수료를 적용한 경우, 적용하지 않은 수수료보다 수수료를 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준일 전일 기준으로 1년 각 유형의 상품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수익률과 기준지표를 비교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유형별 수익률이 기준지표를 초과할 경우, 기본수수료 + 손익수수료를 정수하며, 기준지표 이하 시 기본수수료 - 손익수수료를 정수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유형별 수익률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산출방식으로 계산된 수익률을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유형별 기준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기준지표
저위험	국고채금리3년 1년평균금리 + 1%
중위험	국고채금리3년 1년평균금리 + 3%
고위험	국고채금리3년 1년평균금리 + 5%

\*국고채금리3년: 무담보 채권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시장금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지표

\* 1년 평균금리: 계산기준일 전일 고거 365일(366일) 기준 누적 평균금리(소수점 세째자리 반올림)

(성과에 따른 운용관리손익수수료율을 반영한 비교표)

기준지표 대비 성과구간 <sup>주1)</sup>	사전지정운용적립평가액 <sup>주2)</sup>	
	1.5억 이하	1.5억 초과
초과 성과(A)	0.15%	0.10%
동일(B)	0.11%	0.06%
미달 성과(C)	0.11%	0.06%

주1) 기준지표가 0보다 작을 경우: 운용손익이 0 이상일 때, (A)요율, 기준지표 이상~0미만일 때 (B)요율, 기준지표 미달일 때 (C)요율 적용

주2) 계산 예시: 사전지정운용적립평가액이 3천만원이며, 사전지정운용적립평가액 외의 적립금이 1억5천만원일 때,

사전지정운용적립금 평가액은 1.5억 초과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현행 운용관리일반수수료율)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1.5억 이하	1.5억 초과
0.15%	0.10%

4. 제1호 내지 제3-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부터 4차년도	10%
5차년도부터 10차년도	15%
11차년도 이후	20%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적립금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조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신상실상률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로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기입자에게 별도로 징수 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토지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당금이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1년 이내 중도해지, 계약이전 및 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제1항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당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1년 이내 중도해지, 계약이전 및 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제1항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가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남았다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대비 개인 부담금 평가액의 비중(소수점 세째자리 이하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합계만족 면제합니다.

4. 가입자가 회사에 연금개시신청 후 최초 연금을 수령한 날부터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20%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 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밸빙어음

3. 환매조건부매수계약

4. 파생결합사채

5. 정기예 · 적금

6.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구성상품은 동일비율로 매도합니다)

7. 원리금보장상품과 전집투자증권이 혼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구성상품은 동일비율로 매도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채권형)·채권형(채권형)·주식형(주식형) 주식형의 순서로 합니다.

9. 복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구성상품은 동일비율로 매도합니다.)

10. 실물유기증권(채권)

11. 실물유기증권(채권)

12.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운용관리수수료를 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해 기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기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 제5조 (기입자 교육)

① 계약서 제15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당금납입도, 곤여증류별 수급한도 및 중도인출

2.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3. 기입자의 소득, 자산·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4.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5.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용자 또는 기입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하여 교육자료 발송

2. 연수 · 회의 · 강의 등의 실습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③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기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④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워탁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기입자가 제출한 기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서명)

당사 주소

회사명

영업점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가입자**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한국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운용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란 험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 균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의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 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기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기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할 때는 기업자이거나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5. "급여이전"이라 함은 기업자가 퇴직금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이라 함은 기업자에게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할 때는 금융이전 또는 기업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자가 낸임한 부당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자산지정운용제"는 기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거나 경우 사전에 자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자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10. "내기성상금"이란 기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신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는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기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기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첨달하는 업무

5. 기업자의 급여이전 신청·증명서 출력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범위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 또는 계약종료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제15조에서 정한 연금지급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기자기)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종료일(최종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5조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도의 설정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6조 (가입자 및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워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워탁기기관에 수행하게 한 경우 제19조의 기업자교운 업무의 일부를 재워탁한 경우에는 재워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기입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의의 취지와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별의 번경의 수술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명확할 것

4. 적립금의 증정기·인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기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을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리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신설기반신증권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 국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수체(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자금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핵심부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에 하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기업자에게 제시합니다.

④ 기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초기해 출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고지 3항과 과거운용기준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기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기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 제7조의2 (기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① 회사는 기입자에게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내용 각 목의 사항

가. 수수료구조, 솔직기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기입자에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사항

다. 예금자보호한도 등 기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 제2항부터 5항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3 제4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③ 회사는 기입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 제7조의3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① 기입자는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립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 압니다.

② 기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기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기입자는 회사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제7조의4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

①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한 기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

② 기입자는 제1항에 따라 기입자에게 제21조의2 제2항 각 호의 부당금을 납입한 날의 영업일

2. 기입자가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1. 1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기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정보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2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④ 기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기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기입자가 스스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면 통지해야 합니다.

⑤ 기입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1. 기입자에게 부당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가 제1항에 대기상자금으로 투입

2. 기입자가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에 대기상자금으로 투입

⑥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제7조의5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① 회사는 제7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운용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입자 통지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시유

2.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기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3. 기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

4.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기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입자의 적립금을 운용방법으로 운용되도록 합니다.

④ 회사는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기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⑥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기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기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7조의6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립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기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입자 통지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기입자에게 협의한 방법

② 기입자는 부당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기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기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기입자에게 운용지시에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기입자가 운용시작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기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대로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 예정일의 전작 영업일 전까지 기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7조의4가 적용되며,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되자 전자기기의 적립금 운용은 대기상자금으로 운용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용에 적립금 운용하여 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기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대로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 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그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통합 통지시에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입자에게 운용을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당금은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⑦ 기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과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 시장을 거절하여 운용지시에 해당하는 원칙과 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⑧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기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 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원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기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을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기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기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당금의 납입 등)**

- ① 기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당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일시부당금 : 기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당금 : 기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3. 연금저축계좌와 차별부당금 : 기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제하는 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기업자와 금융기관에 의해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부당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 ①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IRP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제13조 (기인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 ① 기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기인자 정보"라 합니다)를 시연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과 기인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업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재워너기밀을 설정한 경우 통지받은 기인자정보를 재워너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 및 재워너기밀은 사용자는 또는 기업자로부터 통지 받은 기인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자연에 따른 순위에 대해 회사 및 재워너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제할 수 있음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인자정보의 취지 및 제한)**

-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기인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인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 ① 기업자는 회사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 ② 기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기업자가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은 법·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 55세 미만의 기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17조의 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④ 기업자는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연금지급 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계약에서 "연금지급 조건"이라 합니다)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연금지급기간
  2. 연금지급기기(월, 분기, 반기, 연)
  3. 연금지급기준일
  4. 연금지급액 산정방식
  5. 자산매각순서
  6. 기타 연금의 자금을 위하여 회사 및 자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 ⑤ 연금지급액은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⑥ 기업자는 전자연금지급기기인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5항에서 정한 연금지급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을 위한 신탁재산 매각증에는 조건 변경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 입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시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 5호 전단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6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기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인2주택자인 기업자가 기업자에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기업자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기업자 본인  
나. 기업자의 배우자  
다. 기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예산하여 5년 이내에 기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예산하여 5년 이내에 기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까지 결정을 받은 경우)
49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기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기업자 본인  
나. 기업자의 배우자  
다. 기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기업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기업은 사유와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금액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기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기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종도해지)**

- ① 기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 상 중요 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 ① 기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기업자에게 계약이전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을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 ④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원으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기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시지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기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역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1조(면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역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의 지역보상금은 운용지시기기 사전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한다)에 운용지시기기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역보상금여보장법 시행령 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설정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지역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기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 (기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기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선행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기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기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윤리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기업자로부터의 자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기업자로부터의 자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자연
  3. 기업자의 시지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자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기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인감신고)**

- ① 기업자는 운용관리계약을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을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신고사항)**

- 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자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거래증명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기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하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망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기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기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기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기인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기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작하는 통지를 할 경우 "기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기업자가 제작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기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하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망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기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기업자 손실보상)**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기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기업과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기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기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보장)**

-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기업자와 회사가 각각 이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제1조 (시행일)**

- 이 계약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 ①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형 통지시지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②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시행일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별지1 제3조제1항제3호의 적용 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1년초과 여부는 2024년 4월 1일 이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3조 (자동제에의의 우효기간)**

-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기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 직전 영업일 전까지 기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에치됩니다.

-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로부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가 입자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한국국토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 제1조 (업무의 일부위임)

회사는 계약서 제1조 제2항에 의해 연금계리업무 및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자사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자사전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입니다. 운용관리수수료는 운용관리일반수수료와 운용손익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운용손익수수료란 적립금의 운용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수료가 운용손익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기본수수료와 손익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제3조 (수수료의 징수)

-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매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체결일 또는 직접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 일까지의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에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운용관리수수료의 합계로 하며, 해당 계산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정수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일시금 지급의 경우에는 일시금자금일,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일의 경우에는 최종연금지급일, 계약서 제7조에 의한 중도해지일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일시금 지급일, 중도인출일, 최종연금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정수합니다. 이내,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식선훈련비와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차 적용 합니다. 단, 직접 계산기준일부터 해당계산기준일 전일 기준 1년을 초과하여 동일하게 운용자사전달업무(초저위험형 제외)의 일별자산평가액은 3-1호를 적용합니다.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운용관리일반수수료율 (연)
1.5억원 이하	0.15%
1.5억원 초과	0.10%

체차 적용에 대한 예시(일별 적립금 평가액: 3억원) 일별수수료 체차적용 산정식: 「(1.5억원\*0.15%+1.5억원\*0.10%)/n (단, n은 365 또는 366)」

3-1. 제3호를 적용시 저처위험형을 제외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스스로 상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은 다음과 같이 체차적용합니다.

일별 사전지정운용적립금자산평가액 <sup>주1)</sup>	운용손익수수료율 (연) <sup>주2)</sup>	
	기본수수료율 (연)	손익수수료율 (연)
1.5억원 이하	0.13%	0.02%
1.5억원 초과	0.08%	0.02%

주1) 일별 사전지정운용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체차적용시 사전지정운용적립금 외의 적립금을 합산 적용하여 구간별 수수료율 적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함이 있게 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상품구간별로 계산하여,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순서로 평가액합산동일유형 2개 이상 상품은 상품매수일이 빠른 순하여 수수료율을 체차 적용합니다.  
주2)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수수료를 적용한 경우, 적용하지 않은 수수료보다 수수료를 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준일 전일 기준으로 1년 각 유형의 상품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수익률과 기준지표를 비교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유형별 수익률이 기준지표를 초과할 경우, 기본수수료 + 손익수수료를 정수하며, 기준지표 이하 시 기본수수료 - 손익수수료를 정수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유형별 수익률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산출방식으로 계산된 수익률을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유형별 기준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기준지표
저위험	국고채금리3년 1년평균금리 + 1%
중위험	국고채금리3년 1년평균금리 + 3%
고위험	국고채금리3년 1년평균금리 + 5%

\*국고채금리3년: 무담보 채권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시장금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지표

\* 1년 평균금리: 계산기준일 전일 고거 365일(366일) 기준 누적 평균금리(소수점 세째자리 반올림)

(성과에 따른 운용관리손익수수료율을 반영한 비교표)

기준지표 대비 성과구간 <sup>주1)</sup>	사전지정운용적립평가액 <sup>주2)</sup>	
	1.5억 이하	1.5억 초과
초과 성과(A)	0.15%	0.10%
동일(B)	0.11%	0.06%
미달 성과(C)	0.11%	0.06%

주1) 기준지표가 0보다 작을 경우: 운용손익이 0 이상일 때, (A)요율, 기준지표 이상~0미만일 때 (B)요율, 기준지표 미달일 때 (C)요율 적용

주2) 계산 예시: 사전지정운용적립평가액이 3천만원이며, 사전지정운용적립평가액 외의 적립금이 1억5천만원일 때, 사전지정운용적립금 평가액은 1.5억 초과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운용관리일반수수료율)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1.5억 이하	1.5억 초과
0.15%	0.10%

4. 제1호 내지 제3-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부터 4차년도	10%
5차년도부터 10차년도	15%
11차년도 이후	20%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적립금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조

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신상상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로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기입자에게 별도로 징수 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퇴직금여지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1년 이내 중도해지, 계약이전 및 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제1항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1년 이내 중도해지, 계약이전 및 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제1항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가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남았다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대비 개인 부담금 평가액의 비중

(소수점 세째자리 이하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합계만큼 면제합니다.

4. 가입자가 회사에 연금개시신청 후 최초 연금을 수령한 날부터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20%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 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밸빙어음

3. 환매조건부매수계약

4. 파생결합사채

5. 정기예 · 적금

6.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구성상품은 동일비율로 매도합니다)

7. 원리금보장상품과 전집투자증권이 혼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구성상품은 동일비율로 매도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채권형)·채권형(채권형)·주식형(주식형) 주식형의 순서로 합니다.

9. 복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구성상품은 동일비율로 매도합니다.)

10. 실물유기증권(채권)

11. 실물유기증권(채권)

12.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운용관리수수료를 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 제5조 (가입자 교육)

① 계약서 제15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납입도, 곤여증류별 수급한도 및 중도인출

2.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의 소득, 자산·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4.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5.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하여 교육자료 발송

2. 연수 · 회의 · 강의 등의 실습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③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④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워탁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서명)

당사 주소

회사명

영업점